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없음

행정안전부 벤처형 조직 운영기간 연장검토 결과(1년 연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전략담당관과 직급조정한 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여성정책팀과 증원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2명(연구관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운전직 1명(9급)에 대한 임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기능을 현행화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의 분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국립농업박물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국가 먹거리 계획(국가식량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분야 부문별 발전 계획안, 시행계획, 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8. 지역먹거리 계획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구제역 등 대·중가축의 백신대책 수립 및 운영

제11조의2제4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백신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10. 조류인플루엔자 등 소가축 백신대책 수립 및 운영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무소가 없는 시·군지역의 원활한 현장농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사무소장 소속하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29조제2항 중 “1명(7급 1명)”을 “2명(7급 1명, 9급 1명)”으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5”를 “26”으로 하고, 사무운영 서기보 “24”를 “23”으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5”를 “26”으로 하고, 사무운영 서기보 “22”를 “21”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2년 6월 25일”을 “2024년 6월 25

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2022년 6월 25일”을 “2024년 6월 25일”로, “2022년 6월 26일”을 “2024년 6월 26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2년 5월 31일”을 “2023년 5월 3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2년 6월 25일”을 “2024년 6월 25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항 중 “2022년 5월 31일”을 “2024년 5월 31일”로, “2022년 6월 1일”을 “2024년 6월 1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농촌정책국) ①·② (생략)	제8조(농촌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운영	8. -----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국립농업박물관법」-----
9. <u>농촌 활력창출운동에 관한 사항</u>	<삭 제>
10.·11. (생략)	10.·11. (현행과 같음)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분야 부문별 발전계획안, 시행계획, 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삭 제>
13. 삭제	
14. ~ 19. (생략)	14.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u>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신 설>	21. <u>국가 먹거리 계획(국가식량</u>

20. (생 략) ④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u>농촌 뉴타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u> 3. ~ 7. (생 략) 8. <u>전원마을조성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9. ~ 14. (생 략) <u><신 설></u> ⑤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u>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4. ~ 8. 삭 제 9. ~ 11. (생 략) 12. <u>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u> 13. <u>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u>	<u>계획)에 관한 사항</u> 22. (현행 제20호와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 14. (현행과 같음) 15. 「<u>국가균형발전 특별법</u>」에 따른 <u>농림축산식품분야 부문별 발전계획안, 시행계획, 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u> ⑤ -----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육성에 관한 사항</u> 14. <u>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u> 15. (생 략) 16. 삭 제 <u><신 설></u> <u><신 설></u> ⑥ (생 략) ⑦ <u>농촌여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1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⑧ (생 략) 제11조의2(방역정책국) ① ~ ③ (생 략) ④ <u>구제역방역과장은 다음 사항</u>	<u><삭 제></u> 15. (현행과 같음) 17. <u>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u> 18. <u>지역먹거리 계획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u>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14. <u>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u> 15. <u>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u> 16. <u>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u>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방역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을 분장한다.	-----.	를 담당하는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근로자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과 그 밖의 직급별 정원 중 5명(5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 ~ 4.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5. <u>구제역 등 동물백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5. <u>구제역 등 대·중가축의 백신 대책 수립 및 운영</u>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촌여성정책팀은 2022년 6월 25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6. 삭 제		②·제3조 (생 략)	②·제3조 (현행과 같음)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의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10. <u>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대책 수립·운영</u>	<삭 제>		
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u>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백신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u>		
<신 설>	10. <u>조류인플루엔자 등 소가축 백신대책 수립 및 운영</u>		
제24조(농관원 지원 사무소) ① ~ ③ (생 략)	제24조(농관원 지원 사무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무소가 없는 시·군지역의 원활한 현장농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사무소장 소속하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홍보업무	② -----		

정원 2명(공업주사보 1명, 농업 연구관 1명)은 <u>2022년 6월 25일</u> 까지 존속하며, <u>2022년 6월 26</u> <u>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각각 별표 11의 공업서기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 ----- <u>2024년 6월 25일</u> ----- ----- <u>2024년 6월 26일</u>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빅 데이터전략담당관은 <u>2022년 5</u> <u>월 31일</u> 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3년 5월</u> <u>31일</u>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 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 -----

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 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의 인 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1명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 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u>2022년 6월 25일</u> 까지 존 속한다.	----- ----- ----- ----- ----- ----- ----- ----- ----- ----- <u>2024년 6월 25일</u>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 (생 략)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 원으로서, 별표 7의 정원 3명(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및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 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
또는 환경사무관 2명)은 <u>2022년</u>	----- <u>2024년</u>
<u>5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u>2022년</u>	<u>5월 31일</u> ----- <u>2024년</u>
<u>6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u>6월 1일</u> -----
는 정원은 별표 7의 서기관 · 기	-----
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	-----
산사무관 1명 및 행정주사 · 농	-----
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
통계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	-----
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
또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

신 · 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25</u>	<u>26</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4</u>	<u>23</u>	-1

신·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25</u>	<u>26</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2</u>	<u>21</u>	-1